

書 面 答 辯 書

- 질 문의 원 : 김 판 조
- 답변 공무원 : 총 무 과 장
- 질 문 요 지 : 삼진아웃제 운영 기준

답변내용

“ 별첨과 같음 ”

위와 같이 답변합니다.

1999년 2월 일

총 무 과 장 윤 주 보 

— 조직활성화를 위한 —

인 사 관 리 기 준

달 성 군

달성군우수공무원및 『삼진아웃제』 인사관리기준

< 배 경 >

- 국민심서에는 『청렴은 벼슬살이의 근본이며, 검약은 몸가짐의 바탕이다』 라고 하였다. 공무원윤리헌장에서도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.
- 최근 공사생활등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입무추진의 적정성 미흡과 봉사행정 결여등 군민화합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
- 군 산하 전공직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통제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복무와 관련한 『삼진아웃제』 를 도입. 운영코자 함.

1. 근 거 :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
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8조

2. 적용대상

가. 대상 기관 : 군 본청, 의회, 사업소 직속기관, 읍.민

나. 대상공무원 : 전 공무원 및 청원경찰

3. 시행일자 : 1998년 11월 1일

4. 기본방침

- 제2기 민선자치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공직자로서 의식을 개혁하여 적극적인 주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 구현
- 복지부동등 소극적 자세를 지양하고 공직기강을 확립.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며
-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상이토록 하고
- 근무성적이 불량한 공무원에 대하여 감점관리에 의거 단계별 신분조치 (1, 2차 경고, 3차 인사조치) 등 근무 상태를 인사관리에 반영

5. 근무상태관리 기준

< I. 가점관리 항목 >

가. 직부분야

- 각종 업무에 대한 목표달성에 기여한 자
-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민원인으로부터 칭송을 받은 때

나. 친절봉사 및 선행으로 군민에 귀감이 된 자

- 전화응대 친절공무원 선발된 자
- 청렴한 공.사생활로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은자(객관적인 근거에 의함)
- 선행등으로부터 보도된 때
- 외부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때
- 불우이웃돕기 선행공무원

다. 조직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자

- 소양고사(시 이상)성적우수자
- 교육훈련기관 성적우수 표창자
- 각종 표창 수상자

라. 창의성. 군정건분

- 제안제도 입상자

마. 기타 군정 기여

< II. 감점관리 항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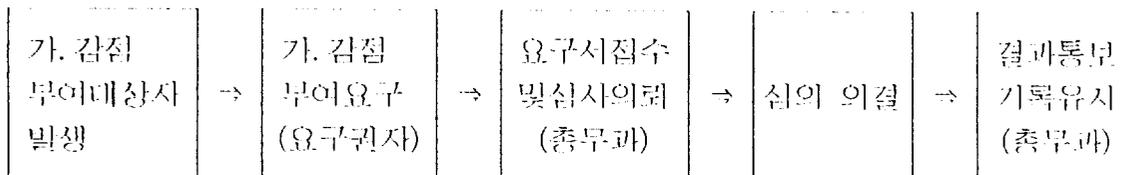
- 직부태만, 업무기피, 소극적 업무처리 할 때
- 업무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
- 대민자세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
- 법령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때
- 제반 복무규정(복무조례) 위반한 때
-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신을 실추케 한 때
- 조직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
- 기타 공사생활 문란으로 불의를 일으킨 때

6. 가. 감점부여 요구권자

- 5급이상 : 소속부서 직 상급자
- 6급이하 : 실과소장, 의회사무과장, 읍.면장

7. 평가 절차

가. 절차



나. 대상

(1) 5급이상

- ① [별표1]의 유형별 가. 감점부여대상자 발생
- ② 소속공무원의 상급자 및 부군수 → [별지1호서식]에 의거 총무과 통보
- ③ 총무과 → 심의 의결요구
- ④ 심의 의결 → 인사위원회(내부위원), 감사부서장
- ⑤ 총무과 → 의결결과 소속부서별 통보, 기록유지

(2) 6급이하(청원경찰 포함)

- ① [별표1]의 유형별 가. 감점 부여대상자 발생
 - 각 실과소, 읍.면장
 - 복무담당(기획감사실, 총무과)부서장은 [별표1]의 대상자 발생시 [별지1호서식]에 의거 총무과 통보(기타 증빙자료 첨부)
- ② 총무과 → 심의 의결요구
- ③ 심의 의결 → 인사위원회(내부위원), 감사부서장

8. 심사. 의결

가. 심의회 구성 : 5 명

○ 심의자

— 위 원 장 : 부군수

— 위 원 : 인사위원 (총무과장, 지역경제과장, 건설과장)
기획감사실장

○ 간 사 : 인사담당

○ 운 영

— 인사위원회운영 규정 준용, 제문서 시행은 인사위원장
병의로 함.

나. 심의시 고려사항

○ 대상자 의견진술기회 부여

○ 심의회에서 감점된 사항이 징계등의 조치로 감점요인이 생길 경우
징계감점의 부족점수에 대하여만 가산

○ 적극적인 입부추진으로 인한 과오에 대하여 최대한 관용 심의

※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

9. 평가유형별 기준 : (별표1)

10. 평가결과

가. 가. 감점은 누적점수로 합산 관리하며, 가산점에 대하여는
특별성이 및 근무평정에 반영하고

나. 감점에 대하여는

누적점수가 3점이상 1차 경고

누적점수가 6점이상 2차 경고

누적점수 10점이상 (직위해제)

· 근거법령 :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(직위의 해제)

- 징계처분에 의거 감점부과의 경우 “견책”이상 처분을 받는 경우 2차경고부터 적용
- 경고대상자에게 경고장 발부 (상징성) 부군수실
 - 1차경고 : 경고장 (노란색) 발부
 - 2차경고 : 경고장 (빨간색) 발부

다. 적용시한 : 가.감점 적용일로부터 1년

< 행정 사항 >

- '98. 10. 16 (금) 09:00 실과장 의견수렴
- '98. 10. 17 (토) 15:00 산하 전공직자 운영지침 교육
- 실과소장, 읍.변장은 산하 전 공직자가 본 지침의 취지에 맞게 법령을 준수하고,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

- 붙임 : 1. 평가유형별 기준표 (별표1)
- 2. 우수공무원 및 삼진아웃인사관리심의 대상공무원 통보 (별지1)
 - 3. 우수공무원 및 삼진아웃 인사관리 심의결과 통보 (별지2)
 - 4. 달성군공무원인사관리 (가.감점)대장 (별지3)

[별표1]

평가유형별 기준표

종 류	가 점 유 형 구 제 적 사 례	부과점수	
1. 직무분야	각종업무의 목표달성에 기여한 자	3	
	적극적인 민원치리로 칭송받은 자	3	
	진화용태 친절공무원 선발자	3	
2. 친절봉사 및 선행	칭찬한 공사생활로 주민으로부터 칭송받는자 (개인적 근기에 의함)	3	
	선행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때	3	
	외부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때	2	
	불우이웃돕기 선행공무원	3	
3. 조직의 위상제고	소양고사(시이상) 상적우수자	1 위	5
		2 위	4
		3 위	3
	교육훈련기관 성적우수 표창자	1 위	4
		2 위	3
		3 위	2
	가중 표창 수상자	훈 장	8
		포 장	6
		내 통 령	5
		국무총리	4
장관급,시,도지사		3	
4. 창의성	제안제도 입상자	시,군,구청장	2
		특 밀 상	5
		우 수 상	4
		우 량 상	3
5. 규정건분	규정통보서 다수제보지 (분기별)	최다제보지	3
		차하제보지	2
6. 기 타	일기되지 않은 가점 사례등	1-3	
7. 부서평가	부서별 공동으로 조직목표 달성, 주민봉사 행정구현, 조직의 위상과 명예를 높인 경우 등	1-3	

평가유형별 기준표

감 점 유 형		부과점수
종 류	구 체 적 사 례	
1. 직무분야	적부태만 및 임무기피, 소극적 임무처리	3
	민원인에 불필요를 주는 행위로 물의 야기	3
	임무추진 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	3
2. 징계처분	징 지	10
	감 봉	6
	긴 제	5
	불문경고	3
	경고 및 훈계	1
3. 법령위반 행위	성실의 의무 위반	2
	복종의 의무 위반	2
	지장이탈금지 의무 위반	2
	천전공정의무 위반	2
	비밀임수 의무 위반	2
	청렴의 의무 위반	2
	품위유지의 의무 위반	2
	영리임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	2
	정치운동금지의 의무 위반	2
	집단행위금지 의무 위반	2
	부당결근, 이시, 지참 등	1
4. 지치법규 위반행위	근부상행부 허위 기재	1
	민원인과 다툼 물의야기	1
	직원상호간 다툼 물의야기	1
	당직근무 위반	1
5. 지시등 행정규칙 위반행위	출장지 이탈	1
	유인미이 및 미판 행위	1
	차량부제 운행 위반	1
	유주운전 및 유주추태	1
	긴급사태 발생시 보고 및 비상소집 불응	1
6. 기 타	지시사항 위반으로 물의야기	1
	일기되지 않은 감점 사례 등	1-2
7. 부서평가	부서별 임무기피, 태만, 임무추진 미흡 등	1-3